



상주시의회 공고 제2024-33호

「상주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 및 「상주시의회 회의규칙」 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11월 18일

상 주 시 의 회 의



「상주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」 예고

1. 제안이유

상주시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(안 제1조~안 제2조)
- 나.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- 다. 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- 라. 스마트농업 육성사업 및 스마트팜 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5조~안 제6조)
- 마. 관련 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(안 제7조)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11월 22일까지 상주시의회 의장(참조: 상주시의회 의회사무국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의견과 그 이유)

제·개정 (안)	수 정 (안)	수 정 사 유

나. 성명(단체일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의견제출 방법: 전자우편, 우편 또는 팩스

1) 전자우편: skysky6641@korea.kr

2) 주 소: (우37183) 상주시 중앙로 111, 상주시의회

3) 팩 스: 054-535-9854 (발송 후 수신여부 확인 요망)

라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주시의회 의회사무국(전화: 054-537-7847)

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, 입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상주시

의회 홈페이지(<https://www.sangjuCouncil.go.kr/> ⇨ 의정소식 ⇨

입법예고)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자치법규명: 상주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○ 성명(단체명):

○ 주 소:

○ 전 화 번 호:

자치법규안 내용	의 견	비 고